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1. 관련근거

- 가. 「내규관리규칙」 제34조(내규의 제·개정 예고)
- 나. 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8107(2018.11.19)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 기준 보완 사항 알람”
- 다. 감사실-3209(2018.11.22)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사항 알람」

2. 위와 관련하여 공단 「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일부를 불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니,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18.12.10(월)까지 인증원 안전인증부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 1. 「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서 1부.
2. 「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



수신자 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노동조합위원장

차장 이동욱 안전인증부장 김용식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 김봉호

협조자
고객결재

시행 안전인증부-3280 (2018.12.03.) 접수 ()

우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북정동) / <http://www.kosha.or.kr>

전화 052-7030-931 /전송 052-7030-339 / ltrip89@kosha.or.kr / 공개

대표번호 052)703-0500 1644-4544 <http://www.kosha.or.kr> /고객참여

o 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침해, 갑질,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을 확인하신 경우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질·비리신고 전화:052-2458-114, 이메일:gamsa@kosha.or.kr, 홈페이지(www.kosha.or.kr)/갑질·비리신고센터)